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
2023. 11. 28(화) 10:00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50호
- 나. 제 출 자 : 정순기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」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 대비 및 행정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(안 제2조)
- 나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다. 조례 통합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삭제(현행 제8조제1항제7호 삭제)
- 라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지침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9조 및 제23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6조, 제10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개별 조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 디자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행정을 마련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음.

나. 주요 내용

- 1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의 정비(안 제2조)
 - 공공디자인 범위에 범용디자인, 사회문제해결디자인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하여 정책 대상을 확장함.
- 2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 -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0조를 준용하여 기본원칙을 신설함
 -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, 구의 역사성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,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
- 3) 조례 통합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내용 삭제(현행 제8조제1항제7호 삭제)
 - 위원회 심의사항 중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
- 4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지침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9조 및 제23조)
- 5) 부칙 안 제2조
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」는 폐지함.
 - 제정 : 2020. 7. 17
 - 유니버설디자인의 통일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유니버설디자인 환경적용에 필요한 맞춤형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장애인·노인·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을 배려한 맞춤형 생활환경 개선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도시 공공디자인 업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8. 8.] [법률 제19592호, 2023. 8. 8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3. 3. 21.>

1. “공공디자인”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이 조성·제작·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.
2. “공공디자인사업”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·조사·분석·자문·설계 및 제작·설치·관리 등을 말한다.
3. “공공시설물등”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·제작·설치·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,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.
 - 가. 대중교통 정류소,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
 - 나.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,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
 - 다. 벤치, 가로 판매대, 퍼걸러(pergola: 서양식 정자) 등 편의시설물
 - 라. 맨홀, 소화전,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
 - 마. 가로수 보호대, 가로 화분대,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
 - 바. 안내표지판, 현수막 게시대,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
 - 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6. 15.>

제6조(지역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광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·도지사는 미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

2023. 3. 21.>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별도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1.>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(이하 “지역계획”이라 한다)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·변경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1., 2023. 8. 8.>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,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3. 21.>
- ⑥ 지역계획의 수립·시행,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3. 3. 21.>

[제목개정 2023. 3. 21.]

제10조(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)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3. 8. 8.>

1.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,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.
2. 연령, 성별, 장애 여부,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.
3. 국가·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, 주변 환경과 조화·균형을 이루도록 한다.
4.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,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.
5.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.
6.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